

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14년 7월 14일
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의장

1. 주 문

○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

- 의사일정 상정 ⇨ 제안(취지)설명 또는 심사보고 ⇨ 질의·토론
(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) ⇨ 이의유무방식 표결 ⇨ 의결

※ 이의가 있는 안건 → 의사진행발언 또는 토론 허가 → 기명전자투표방식 표결

※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질의·토론을 생략하도록 정한 안건 → 질의·토론 생략

○ 본회의 부의안건 표결방식

- 일반안건 : 이의유무방식(이의가 있는 경우 기명전자투표 실시.
다만, 표결방식 변경 의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)

- 특별안건 : 기명 전자투표(위원 선임, 재의요구안, 수정안, 그 밖에
이건이 있는 쟁점안건. 다만, 표결방식 변경 의결이
있는 경우 그에 따름)

- 각종선거 :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

2. 제안이유

○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의 본회의 심의시 의결로 질의·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, 이는 매 회기마다 의결 후에 안건을 심의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.

- 따라서, 원활한 안전심의를 위해 제7대 의회 임기 중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모든 안전에 대한 심의절차와 표결방식을 정하여 일괄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71조

-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함.
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

- 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함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음.
- 다음 안전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함.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· 선거 및 사임 동의 | · 불신임 및 회기 중 사직 허가 | · 위원 선임·개선 또는 보임 |
| · 5일 초과 청가 허가 | · 결산검사위원 선임 | ·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|
| · 재의 또는 본회의 의결안건 번안 | | · 행정사무조사 발의 |
| ·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 보고 | | · 재정 및 인력 관련 보고 |
| · 본회의 출석 요구 | · 회기 결정 및 휴회 결의 | · 의안 정리권 위임 |
| ·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| ·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| |
| · 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회 | | · 위원회 폐기의안 재심의 |
| · 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 | | · 본회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 |
| · 그 밖에 본회의가 직접 심의하기로 의결한 안건 | | |
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4조

-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음.

-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음.

○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

-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함.
-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. 다만,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음.

○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

-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음.
-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·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함.
-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함.
-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함.

4. 참고사항

○ 명문규정이 있거나 선례에 의한 다음 안건은 질의·토론을 생략함.

- 의장·부의장직 사임 동의(同意) : 회의규칙 § 12②
- 의사일정변경 동의(動議) : 회의규칙 § 18
- 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 동의(動議) : 회의규칙 § 42③
-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: 회의규칙 § 52②
- 의원의 사직 허가 : 지방자치법 시행령 § 61, 회의규칙 § 76②
- 의원 인사<선거 및 선출안, 추천안>에 관한 안건 : 의회운영조례 § 31③
- 안건처리 보류 동의(動議) : 선례
- 회의중지<정회> 또는 산회 동의(動議) 등 의장의 의사(議事) 정리에 관한 안건 : 선례